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※ '사외이사' → '독립이사' 변경 사항 先 반영

(Independent Director Recommendation Committee)

2026. 3. 20

삼성물산주식회사

목 차

제 1 장 총 칙

제1조 【목적】 · · · · · · · · 1

제 2 장 구 성

제2조 【구성 및 선임】 · · · · · · · · 1

제3조 【위원장】 · · · · · · · · 1

제4조 【위원의 임기】 · · · · · · · · 1

제 3 장 회 의

제5조 【위원회】 · · · · · · · · 2

제6조 【위원회의 소집】 · · · · · · · · 2

제7조 【독립이사후보 추천】 · · · · · · · · 2

제8조 【결의방법】 · · · · · · · · 3

제 4 장 결의사항

제9조 【결의사항】 · · · · · · · · 3

제10조【의사록】 · · · · · · · · 3

제11조【권한】 · · · · · · · · 4

제 5 장 기타사항

제12조【기타 요구 등】 · · · · · · · · 4

제13조【통지의무】 · · · · · · · · 4

제14조【간사】 · · · · · · · · 4

제15조【경비】 · · · · · · · · 5

제16조【규정의 개폐】 · · · · · · · · 5

〈 부칙 〉 · · · · · · · · 5

제 1 장 총 칙

제1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삼성물산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정관 제28조의 2 및 이사회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독립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, 운영,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2조【구성 및 선임】

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제3조【위원장】

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결의로 선정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【위원의 임기】

위원의 임기는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제 3 장　회　의

제5조【위원회】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6조【위원회의 소집】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,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【독립이사후보 추천】

① 위원회는 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 위원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독립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사의 독립이사이거나 독립이사였던 자를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해당 독립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·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8조【결의방법】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,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은 본인을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4 장 결의사항

제9조【결의사항】

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·결의한다.

제10조【의사록】

①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1조【권한】

① 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전에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
② 위원회는 독립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독립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 5 장 기타사항

제12조【기타 요구 등】

① 위원회는 독립이사 예비 후보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경영진,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 등 관련자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3조【통지의무】

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여 위원회가 재의할 것을 결의 할 수 있다. 단,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4조【간사】

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, 이사회 의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제15조【경비】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6조【규정의 개폐】

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

< 부 칙 >

1. 이 규정은 2014년 08월 1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5년 09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8년 04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25년 0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26년 0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 다만, 제1조, 제2조 ①항, 제7조, 제8조 ③항, 제9조, 제11조, 제12조의 독립이사 관련 개정사항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